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곽향기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하고 61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해주신 「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리며,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

□ 최근 스마트 기기를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증가 및 비대면 생활 확장으로 인한 무인 단말기의 보편화 등 노인의 스마트 기기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는 반면 노인층의 기기활용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마저 야기하고 있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에서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및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과 관련한 실태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이는 노인 스마트 기기 및 무인 단말기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도우며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
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

안 제4조에서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

안 제5조에서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관한 사업 시행사항

안 제6조에서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관한 지원사항

안 제7조에서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